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 정 이 유

○ 환경부예규 제232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2003. 7. 28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과태료 처분 용어 개정
- 의견진술을 의견 제출로
- 의견진술기한을 의견제출기한으로

○ 생활폐기물처리 방법 및 배출방법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 개정
-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 과태료부과 금액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부과 금액 조정에 따라 부과 금액 조정
- 부과금액을 천원 단위에서 만원 단위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3. 10. 6 ~ 10. 25(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홈페이지 게재, 성주군공보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재
○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6. 참 고 자 료

환경부예규 제224호(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개정령)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피처분자"를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진술"을 "제출" 로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중 "의견 진술"을 각각 "의견 제출"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내 "진술하고"를 "제출하고"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갑서식 및 동호을서식중 "의견진술기한"을 각각 "의견제출기한"으로 하고, 동호 을서식중 "진술"을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자(법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적정처리·보관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 하는 경우	300	500	700
	(8)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상	500이상
		300이하	500이하	700이하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이상	400이상	600이상
		4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4)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보관량이 15톤(10㎥)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보관량이 75톤(50㎥)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5)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20	50	100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100이하	500	700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100이하	500	700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 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 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4)(2)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나. 가목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 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경우	1,000	1,0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이하	1,000	1,0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제때에 작성,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2)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200 300	300 300
	(3)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	300	3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 폐기물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100	2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자(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료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이하	70	1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6.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이하	30이하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 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100	100	100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 제1항)	30	50	100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제 43조)	100	100	100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견진술 등)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견청취 등) ①---------- ----------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 --**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 -----
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 ---------- **의견제출**---------- ----------**의견제출**- ---------- .
③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에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군수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견제출** ---------- ---------- --------- **제출하고** ---------- ----------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④ ---------- --------- **의견제출** ----------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태료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은 환경부예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 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부과기준) ①---------- ---------- ---------- ---------- ---------- ---------- ---------- ---------- ----------.
〈신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 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성주군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